

#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영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2.

발의자 : 김영춘 · 박정 · 박홍근

김종대 · 이재정 · 신창현

김정우 · 유은혜 · 임종성

김철민 · 서영교 · 조정식

정인화 · 전재수 · 최인호

김해영 · 오제세 · 우원식

박재호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  
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에 대  
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, 호텔, 위터파크  
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도  
시장·군수·구청장인 해당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  
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따라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  
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상의 건축위원회가  
아닌 시·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

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
(안 제17조제2항, 제17조제4항제4호 신설).

##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본문 중 “대상인 건축물”을 “대상인 건축물(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(그 소속 기관의장을 포함한다) 또는 시·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, 승인관청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자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